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와 지자체의 특수교육 관련 시책 마련 등〉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75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함	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 마련	5
3. 개정안 부칙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예지 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3. 26.

3. 회 부 일 : 2026. 3.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특수교육담당 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육교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교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특수학교 등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특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및 제2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위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각급학교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제56조에 따른 특수학급 및 제59조에 따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통합교육(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특수교육교원이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의안으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74호)」에서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1인으로 하고¹⁾, 통합학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신중검토

- 「정부조직법」 제8조제1항²⁾에서 국가행정기관에 배치하는 공무원의 정원 및 배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 (인천, 충남) 교원 정원 부족 상황에서 배치기준의 법률 상향은 탄력적 인력 운용을 저해하므로 정원 확대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함.

1)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74호)에서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에서 명시하면서 특수교육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 2인당 1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의 법적 강제력을 강화하여 특수교육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촉진시키고, 특수교육교원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를 감소시켜 특수교육대상자의 권익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법정정원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배정정원의 법정정원 대비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조직법」 등에서 공무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와 부합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 마련(안 제28조의3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와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8조의3(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와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 2) 「정부조직법」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① 각 행정기관에 배치할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공무원 배치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행정기관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배치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률로 정한다.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	-----------------------------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교육 담당 교사의 배치와 교육과정 및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제공 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동 시책 마련으로 특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초·중등교육법」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근거 마련, 학력 인정, 통합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시책 마련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³⁾,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특수교육교원 배치⁴⁾, 교육과정⁵⁾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⁶⁾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등을 위

3)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 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현행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

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특수교육 지원 강화라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등의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임.

<시·도교육청> 신중검토

- (광주) 해당 조문은 현행 법체계와의 적합성 및 정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여 운영할 수 있다.

- 6) 「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⑨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수교육법”이라고 한다)」(의안번호 제17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특수교육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임.

[「특수교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7774호) 부칙]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186